문1	>(40)			
Ι	(물음1)			
1	.감정평가방법			
	(감칙§24③,실무	기준)수익환원법	선정하되,	
	FCFF 모형 DC	F법 적용함		
2	.기업의 영업가	え]		
1)FCFF			
	(1)변수 확정			
	①매출액 증가율			
	가.대상 기준	,		
	2017~2018	2018~2019	결정	
	2,100/2,000-1=0.05	2,205/2,100-1=0.05	0.05	
	나.동·유사업종 🕻	기준		
	(0.0492+0.048	2+0.0524)/3=	0.05	
 	다.매출액 증가			
	(0.05+0.05)/2=	=	0.05	
	②매출원가율			

		2017	2018			2019	결정
	1,000/	/2,000=0.5	1,050/2,10	0=0.5	1,102	2.5/2,205=0.	.5 0.5
							•
(③판	매·관리I	비율				
	4	2017	2018			2019	결정
	200/2	2,000=0.1	210/2,100	=0.1	220	.5/2,205=0.1	0.1
					l 		
(④운	전자본	소요율				
	1/8+	1/10-1	1/20=				0.175
	(2)F	CFF				(단위:	백만원)
		1	2	3	}	4	5
매출	액*1)	2,315	2,431	2.5	53	2,680	2,814
II .	세후 이익∗2)	722	758	79)6	836	878
II 1	상각비 *3)	115	120	12	25	130	135
	적지출) *4)	69	73	7′	7	80	84
(순운	전자본 삼)*5)	19	20	2:	1	22	23
FC	FF*6)	749	785	82	23	864	906
	*1)전기 매출액×1.05						
	*2)매출액×(1-매출원가율-판매·관리비율)×(1-법인세율 22%)						
	*3)5백만원·증가······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			
	*5)매출증가액×운전자본소요율						
	*6)세후영업이익+감가상각비-자본적지출-순운전자본증가액						

2)WACC	
(1)자기자본비용	
$0.035 + 0.9767 \times (0.12 - 0.035) =$	0.1180
*)	
*) (0.9654+0.9885+0.9763)÷3	
(2)타인자본비용	
$0.07 \times (1-0.22) =$	0.0546
(3)WACC	
$0.4 \times 0.118 + 0.6 \times 0.0546 =$	0.08
3)기업의 영업가치	
(1)추정기간 영업가치	
749 785 823 864 906	
$1.08 + 1.08^{2} + 1.08^{3} + 1.08^{4} + 1.08^{5}$	
×1백만= 3,272	,000,000
(2)추정기간 후 영구영업가치	
906백만÷0.08 ^{*)} = 7.708	,000,000
1.08^{5}	
*) WACC-g : 0.0839-성장률 0%	

(3)기업의 영업가치: 10,980	0,000,000
3.기업가치	
1)비영업용자산가치:7억+3억= 1,0	000,000,000
2)기업가치	
10,980백만+1,000백만=11,98	0,000,000
Ⅱ (물음2)	
1.특허권의 유효 잔존수명	
1)기술수명 영향요인 평점	
$1\times6+0\times4=$	6
2)경제적 수명기간	
$9 \times (1 + 6/20) =$	11.7년
*)특허인용수명 중앙값	
3)경제적 수명 적용기간	
11.7년-6년=	5.7년
*)	
*)특허 등록 이후 경과연수: 등록번호 후단(13)	고려하여
출원일과 동일하게 2013년도에 등록된 것으로	봄
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4)경제적 수명	
5.7년 < 법적 잔존기간 13년'이	므로
경제적 수명 적용기간인	5.7년
5)특허권의 유효 잔존수명:	<5년>
(연단	<u></u> 위 미만 절사)
2.특허권 가치	
1)감정평가방법	
(감칙§23③,실무기준)수익환원법	선정하되,
기업전체 영업가치에 기술기여도	를 곱하는
방법을 적용함	
2)기술기여도	
(1)산업기술요소	
식료품제조업인	0.513
(2)개별기술강도	
$[(4 \times 6 + 3 \times 4) + (4 \times 4 + 3 \times 6)]/100$)= 0.7
(3)기술기여도	
$0.513 \times 0.7 =$	0.3591

3)특허권 가치
(1)기업의 영업가치: 10,980,000,000
①기업가치의 추정기간과 특허권의 유효
잔존수명이 동일하므로, 물음1의 기업의
영업가치를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며,
②자본회수 부분으로서 추정기간 후 영구
영업가치 또한 포함함
(2)특허권 가치
$(1)' \times 0.3519 = 3,864,000,000$
Ⅲ.(물음3)
1.감정평가방법
(감칙§23③,실무기준)수익환원법 선정하되,
영업관련 기업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을
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함
2.영업투하자본
1)영업자산
(5+6+25+10+8)×1억= 5,400,000,000
*)비영업자산인 단기금융장품, 장기투자자산 제외

2)영업부채: 1,100,000,000
	*)비영업부채인 장기차입금 제외
	유동부채상 단기차입금 등 비영업부채는 없는 것으로 봄
3)영업투하자본: '1)'-'2)'=4,300,000,000
3	.영업권 가치
	10,980백만-4,300백만-3,864백만
	*)영업관련 기업가치 *)특허권가치
	=2,816,000,000
	-끝-
문2	>(30)
I	감정평가 개요
	(法67②)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가격 변동
	배제에 유의하여 토지보상평가를 행함
П	적용공시지가 선택
1	.원칙
	(法70③)사업인정 전 협의 평가로서, 가격
	시점 전 최근 공시지가인 '19.1.1'

2.法70⑤ 적용 여부(令38의2) 1)사업·면적 요건 ①공원사업으로 도로 등 선적사업 아니며 ②면적 약 1백만m'>20만m'으로 '요건충족' 2)변동률 요건 (1)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$(18.1.1 \sim 19.1.1)$ $\left[\left(\frac{160}{156} - 1 \right) + \left(\frac{171}{166} - 1 \right) + \left(\frac{29}{28} - 1 \right) \right] \div 3 = 3.049\%$ (2)요건 검토 7.216-3.049=4.167%≥3%이고, 3.049/7.216=42%<70%이므로 '요건충족' 3)적용 여부 지가변동이 인정되어 '法70⑤' 적용 <18.1.1> 3.적용공시지가 선택: 해당 사업의 공고일인 18.1.10 전 최근 공시지가 선택하여 해당 사업에 따른 개발손실 배제'함

Ⅲ.비교표준지 선정
1.선정: <1>
2.근거
①용도지역(자연녹지), 이용상황(전) 동일
②사업구역 내, 특히 동일한 1구역 내로
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표준지 선정함
IV 시점수정(지가변동률)
1.원칙
(令37①)비교표준지 소재 C시 용도지역별
기준하여 '1.04202'
2.令37② 적용 여부(令37③)
1)사업·면적 요건: '요건충족'
2)변동률 요건
공고일부터 가격시점까지 C시 평균 지가
변동률 5% 미만이며, 사업인정이 없는
사업으로서 '요건 불충족'
3)적용 여부

지가의 변동 인정되지 않으므로	숙37(9) 으
	110101
적용하지 아니함	
3.시점수정치: <1.	04202>
令37① 원칙 적용함	
V.개별요인 비교	
1.공원 저촉 요인 비교치	
1)방침	
공원 저촉과 미저촉 대쌍자료로/	서 매매
사례(가, 나) 선정함	1 11 11
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
2)비교치(미저촉/저촉)	
$360,000 \times 1.03892 \times 1 \times 1.04/1.08$	= 1.25
$280,000 \times 1.02847$	1.20
∴ 20%~80% 범위 내 속하여 건	적정함
2.개별요인 비교치	
(則23①단서)대상의 공원 저촉은	해당 사업
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제한 6	없는 상태
상정함	
$1 \times 1.25 =$	1.25

VI.그 밖의 요인 보정
1.거래사례등 선정
1)선정: 매매사례<나>
2)근거
해당 사업 공고일 전 사례로서 적용공시
지가 선택기준에 적합하여, '해당 사업의
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례'선정함
2.거래사례등 기준 격차율 산정
$360,000 \times 1.03892 \times 1 \times 1/1.08 = 1.70$
$156,000 \times 1.04202 \times 1 \times 1.25$
3.평가사례 분석을 통한 검증
평가사례 ㄱ(320,000), ㄴ(380,000) 등
고려 시 상기 격차율은 적정 범위 내에
있는 것으로 판단됨
4.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
상기 적정 사례를 통한 격차율, 평가사례
분석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감정평가
에 적용할 격차율은 <1.70>으로 결정함

VII.감정평가액 결정
$156,000 \times 1.04202 \times 1 \times 1.250 \times 1.70$
=@345,000
$(\times 1,235=426,075,000)$
-끝-
문3>(20)
I.처리방침
NPV법 및 PI법으로 개발계획의 타당성을
검토함
Ⅱ Inflow(개발 후 부동산 가치)
1.임대개시시점 부동산 가치(직접환원법)
1)NOI
$145,000 \times (2,700 \times 0.7) = 274,050,000$
2)R(Ellwood법)
(1)C계수
$0.1 + \frac{(1+0.07/12)^{60} - 1}{(1+0.07/12)^{240} - 1} \times \frac{0.1}{1.1^5 - 1}$
$(1+0.07/12)^{240}-1$ $1.1^{5}-1$
$\frac{0.07/12 \times (1 + 0.07/12)^{240}}{(1 + 0.07/12)^{240}} \times 12 = 0.02948$
$-{(1+0.07/12)^{240}-1} \times 12 - 0.02948$

(2)R
0.1-0.6×0.02948-(1.02 ⁵ -1)×SFF(10%,5년)
=0.0653
3)임대개시시점 부동산 가치
274,050,000÷0.0653= 4,196,784,000
2.Inflow(기준시점 개발 후 부동산 가치)
$1' \times 1/1.08 = 3,885,911,000$
Ⅲ.Outflow
1.대상부동산 매수금액
1)토지 매수금액
(1)공시지가기준법
도로조건이 동일하여 보다 이용가치가
유사한 <2>
$1,870,000 \times 1.01752 \times 1 \times 0.99 \times 1.25$
=@2,350,000
(2)거래사례비교법
1,150백만/490×(0.7+0.3/1.08)×1.00697
$\times 1 \times 1.02 =$ @2,360,000
(3)토지 매수금액 결정

:		
상기 가액 유사하여 각 가액의 합리성		
인정되며,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목적		
이므로 보다 시장성 잘 반영한 비준가액		
으로 결정함		
$@2,360,000 \times 530 = 1,250,800,000$		
2)매수금액		
1)'+ 150백만= 1,400,800,000		
2.건축공사비 등		
$900,000 \times 2,700 \times (0.3 + 0.7/1.08)$		
=2,304,000,000		
3.Outflow		
1'+'2'= 3,704,800,000		
IV.개발계획의 타당성 분석		
1.분석기준		
1)NPV		
3,885,911,000-3,704,800,000		
=(-)181,111,000		
2)PI		
3,885,911,000÷3,704,800,000= 1.049		

2.타당성 분석	
NPV>0, PI>1 이므로, 해당 개발계	계획의
타당성은 <등	·정됨>
	-끝-
문4>(10)	
I.(물음1)	
1.매매사례 매매금액	
계약임대료 기준	
2,200×PVAF(5%,4년)+65,000/1.	05^4
=61,27	7만원
2.매매사례 시장가치	
시장임대료 기준	
3,000×PVAF(5%,4년)+65,000/1.	05^4
=64,11	4만원
3.사정보정률	
$1' \div 2' - 1 = $ (-)4	1.43%
Ⅱ.(물음2)	
1.환원율의 차이	
1)계약임대료 기준 환원율	
2,200/64,114=	3.43%

2)시장임대료 기준 환원율	
3,000/64,114=	4.68%
3)환원율 차이	
계약임대료 기준 3.43%, 시장임대	대료 기준
4.68%로서, <1.25%포인트 차이크	로 계약
임대료 기준 환원율이 작음>	
2.환원율 차이의 의미	
시장가치가 동일함을 가정하고, >	계약임대
료가 시장임대료보다 작은 경우	환원율
역시 낮게 도출됨	
이는 환원율 또한 투자수익률의	성격을
가짐으로서 낮은 임대료에 따라 투	자수익률
또한 낮게 도출됨을 의미함	
	-끝-
-이하 여백-	
<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	
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	>